

제 호

시장관리자 지정서

1. 시장명:

2. 소재지:

3. 시장관리자

가. 법인(조합)명 또는 상인조직·단체명:

나. 대표자 성명: (생년월일:)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관리자를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